보도자료

보도일시	[지면보도] 2023년 8월 3일 (목) 조간부터 [인터넷 기사] 2023년 8월 2일 (수) 12:00이후 가능
담 당 자	[연구관련]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044-287-6222, leesh99@kli.re.kr) 김홍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 (044-287-6404, hjkim88@kli.re.kr) 김기웅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팀 (044-287-6571, kiwoong913@kli.re.kr)
배포일시	2023년 8월 2일 (수) 10:00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고용효과

□ 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

○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 연장은 고령자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책임

- 주된 일자리는 고령자가 생애과정에서 오랜 기간 숙련을 축적해 온 일자리로, 이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 연장은 사회적으로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소득을 확보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고용 지원은 정년에 도달한 임금근로자에게 정년 이후까지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주된 대상은 정년까지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임
- 따라서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정년까지 고용

을 유지하는 고령 근로자가 많을수록 제도의 영향을 받는 정책 대상이 늘어남

- 또한 정년제 운영 기업 중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수, 개별 기업이 정년 후 재고용하는 고령 근로자 수, 청년이나 준고령층 등 다른 연령대에서의 고용변화 정도에 따라 고용효과가 결정됨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으로,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정년 후 계속고용된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사업지에게 지급하며, 수혜 사업장과 근로자 규모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정년 후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임
- 반면, 대규모 기업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일부에게 재고용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면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정책효과

○ 2020년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한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녔음

- 업종으로는 제조업이 49.4%로 가장 많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7.8%, 도소매업이 7.9%, 운수업이 7.5% 순서였음
- 사업주가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로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77.6%로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이 13.9%, 정년폐지가 8.5%를 차지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하여, 2020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도입이 특정 연령대 재직자 비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음

- 분석결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시행으로 합성 비교집단의 같은 기간 변화에 비해, 수혜 사업체의 60~64세 재직자 비율이 5.8%p 증가했지만, 55~59세 재직자 비율은 3.2%p 감소하였음. 20~29세와 30~39세 재직자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관측되었음

3. 고령자 고용연장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전망

○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시나리오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새롭게 의무 재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의무 재고용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 가운데 재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재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의 고용효과

- 앞서 추정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에 수혜 사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를 적용하면, 현행 보조금 제도의 고용효과는 매년 4,388명 규모로 추정됨. 향후 사업체 규모가 늘어나고, 정년에 도달하는 고령자가 많아지면, 고용효과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것임
- 현행 30만원 보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0.15%p)이었지만, 보조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용효과가 약 27% 가량 증가하였음

○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의 고용효과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는 비율은 50%, 70%, 100%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였고, 우선지원대상 사업체와 그 외 사업체를 구분하였고, 기존에 관측된 재고용율과 새로 도입할 의

무 재고용 비율의 차이를 고용효과로 간주하였음

- 분석결과, 기존의 재고용률이 높은 우선지원대상 사업체보다 그 외 사업체에서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의무 재고용 비율에 따라 연간 7,912명~26,522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음. 타 연령대의 고용감소를 고려하면 고용효과가 연간 5,556명~13,733명 규모로 줄어들었음

○ 의무 재고용제도와 보조금 지원 병행의 고용효과

- 61세까지 모든 사업체에 의무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후, 우선지원대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62~63세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는 경우, 의무 재고용제도만 운영하는 경우의 고용효과보다 우선지원대상 사업체에서 연간 1,335명~3,669명의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음

4.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법정 정년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정년 이후부터 노령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단절을 줄이고, 노년기 빈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보조금 제도 확대 및 의무 재고용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의 영향을 받는 대상 집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정년제 운영 사업체 수를 늘리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할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함. 고령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를 확대 및 내실화하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일자리 탐색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끝.